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정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양권석

#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자아실현 및 삶의 질을 향상코자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제5조)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안 제2조)
- 협의회 운영(안 제3조)
- 수당 등(안 제4조)
- 운영세칙(안 제5조)

### 나.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실시 또는 예산의 지원(안 제6조)

-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제9조)**

-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안 제7조)
- 진흥원이 지정 취소(안 제8조)
- 지도·감독(안 제9조)

**라.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등 기준설정(안 제10조)**

**4.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개정(2008년 2월 15일 시행)되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제5조)**

-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조)
-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안 제3조)
- 협의회 참석에 대한 수당(안 제4조)
-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안 제5조)

○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6조)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제9조)

-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와 지정공고 및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7조)
- 진흥원의 지정취소 사유(안 제8조)
-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9조)

○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안 제10조)

- 평생교육 학습자의 안전에 대한 보험가입 및 생명·신체상의 손해보상에 대한 규정

금번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지식·정보의 증가 등에 의해 지식변화의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에 대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므로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첫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및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둘째,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개정되어 2008년 2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도가 조례안을 제정(전라도는 상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하였음에도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늦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셋째,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지원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붙임 1.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시·도별 평생교육진흥 조례 현황

시·도	조례명	제·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2. 2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2.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5.1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세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10.1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08. 7. 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8.12.2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8.10.16	
경기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4. 3	
강원도	강원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9.25	
충청남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8.10.30	
전라남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2. 5	
경상북도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2009. 3. 9	
경상남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8.13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3.18	

※ 전라북도, 충청북도만 없음

※ 전라북도는 2009년 4월 1일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 처리됨.